

매 매 예 약 서

주문자 甲과 공급자 乙은 당사자간에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"A"제품의 예약 주문 및 거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.

- 제1조(계약의 목적) 甲은 시행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함에 있어서 乙이 생산하고 있는 "A"제품의 매매예약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매매예약) 甲이 주문한 수량에 관하여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면 본 계약은 성립되고, 乙은 성립된 매매계약에 따라 甲에게 본 건 제품을 납품할 의무를 진다.
- 제3조(제품의 단가) 단가는 개당 금〇〇〇원으로 한다. 단,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본 건 제품의 원료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가격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.
- **제4조(주문수량)** 甲은 본 건 제품을 주문 시 乙의 생산능력을 감안하여 1회 주문 량은 ○○○을 초과하여 주문하지 못하되, 乙이 초과분에 대하여 동의한 때에는 주문할 수 있다.
- **제5조(인도시기 및 장소)** (1) 乙은 甲이 주문한 때로부터 ○월내에 주문한 수량을 甲의 본점소재지에서 인도하여야 한다.
 - (2) 만일에 甲이 (1)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제품을 인도하지 못할 시에는 乙은 미인 도 제품 1개당 금〇〇워의 지연손해금을 甲에게 배상하여야 한다.
- 제6조(대금지급시기 및 지급방법) (1) 甲은 제품을 인도받은 후 ○일 내에 乙에게 대금을 지급하되, 대금지급은 현금으로 하여야 한다.
 - (2) 만일에 甲이 제 때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乙에게 미지급대금의 1할을 지연손해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.
- 제7조(계약의 해제) (1) 甲과 乙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를 통지할 수 있다.
 - (2) 해제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- **제8조(관할법원)**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甲과 乙이 합의하여 결정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○○지방법원으로 한다.

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, 각 서명·날인하여 각자 생생 보관한다.



2000년 0월 0일

주 문 자	주	소					
	성 또 상	편이 기기 /억	인	주민등록번호 또 는 사업자등록번호	-	전 화 번 호	
공 급 자	주	소					
	성 또 상	명 닌 호	인	주민등록번호 또 는 사업자등록번호	_	전 화 번 호	